

# 건축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항령	현행	개정일('90.1.18)	비고
제26조 (내화구조)	1호(법)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두께가 10cm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에 두께 4cm이상의 철망모르티 또는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두께가 5cm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cm 이상인 것. 8호. 기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 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7호. 기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 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라'목 신설 개정 ※ 방재시험소는 국립건설시험소로 지정시험 기관으로 지정되었음. 개정
제27조 (방화구조)	8호. 상기에 계기한것 외에 건설부장관이 이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8호. 기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 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개정
제29조 (방화문의 구조)	7호. 상기에 계기하는것 외에 건설부장관이 이에 준하는 방화성능이 있다고 지정한 것. ①항. 3호 및 ②항 4호 상기에 계기하는것 외에는 건설부장관이 이에 준하는 방화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7호. 기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 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①항. 3호 및 ②항 4호 기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 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개정
제35조의 2 (배연설비)	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종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및 관람집회 시설의 외부에 접합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 개구부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외부에 접합부분에 설치하는 창문개구부"를 거실로 한다.	개정
제37조 (복도의 폭)	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종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및 관람집회 시설의 외부에 접합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 개구부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항. 공동주택의 공용복도의 유효폭은 갓복도식의 경우에는 1.2m 이상, 중복도식의 경우에는 1.8m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중복도식에 있어서는 복도의 길이가 40m를 넘는 경우에는 40m마다 측벽폭의 1/2 이상이 외기에 면하여야 한다.	"4항"신설
제46조 (대규모 건축물의 대지안의 통로)	①항.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건축물에는 그주위에 폭 3m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항.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건축물"을 연면적이 5만㎡ 이상 또는 16층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개정